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통합 안내서

Contents

I	개요	01
	1. 발간 필요성	01
	2. 안내서 구성	02
	3. 주요 용어 정의	02
II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03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03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05
	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관리 및 유지	07
III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11
	1.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기본원칙	11
	2.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전 준수사항	13
	3.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시 준수사항	15
	4. 주요 서비스 모델	17
IV	FAQ	20
	1. 자주하는 질문(FAQ)	20
부록 01	각종양식	22
부록 02	참고자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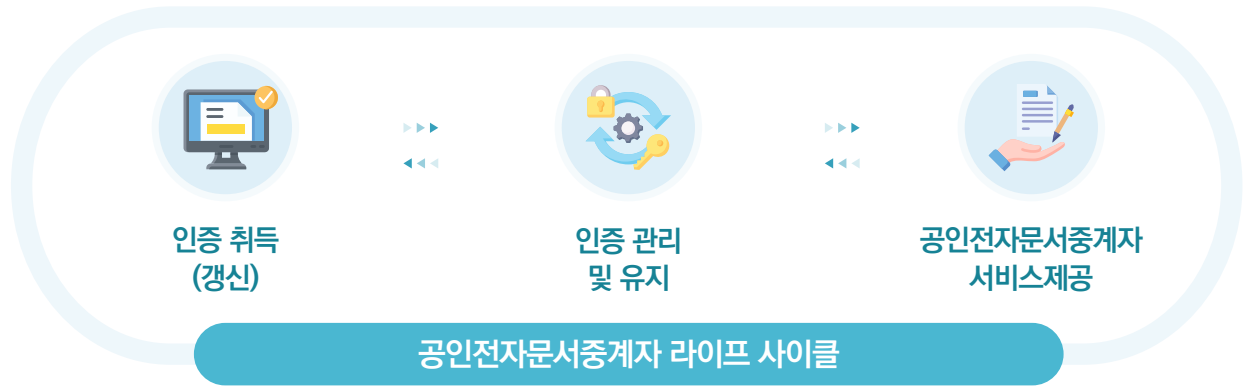
개요

1.1 발간 필요성

- 2009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 법”) 개정으로 신뢰 있는 전자문서의 거래 및 유통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 중계자 제도는 최초 PC 기반의 샵메일을 이용한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이제는 중계자 제도를 통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3,600만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문서 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계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중계자로 인증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0월 기준 18개社까지 확산되었습니다.
- 중계자로 인증 받은 사업자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자문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계 서비스가 다양화 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률적 검토 사항, 이용자 보호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 이 안내서는 중계자가 중계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들을 정의함으로써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 더불어 중계자 인증 취득을 원하는 사업자 및 현재 중계자 인증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중계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도 함께 담아 중계자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 안내서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1.2 안내서 구성

- 해당 안내서는 중계자 인증 취득부터 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 실제 서비스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 중계자 전반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중점으로 다루지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3 모바일 전자증명 정의

- 해당 안내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전자문서법 제31조의18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전자문서 유통)를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증을 받은 자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법 제18조의4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
유통증명서 ※전자문서법 제18조의5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전자문서의 명칭,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 등의 유통정보가 담긴 증명서
모바일 전자고지	공공·행정·민간 기업에서 각종 고지문을 국민들에게 중계자 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하는 대국민 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송달의 효력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진본 보관 효력을 결합한 서비스로 중계자가 송달하고, 전자문서센터가 증명하는 전자문서 제도 기반 신뢰 서비스
중계자 플랫폼	중계자가 국민에게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 또는 앱
CI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한 값으로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용자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식별값으로 이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2.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정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관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자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중계자 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문서 유통 제도입니다.



공인전자주소 기반 유통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법에서 정의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자를 식별하는 식별 값으로 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송·수신자를 식별하여 전자문서를 유통합니다



유통정보의 보관 및 증명

공인전자주소기반으로 유통 된 문서에 대한 유통정보(송신·수신·열람 사실 등)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중계자 시스템을 통해 보관되며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송신자와 수신자 간 법적 분쟁 시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한 부인방지, 유통사실 증명 등 법정 추정효력을 갖습니다.





공인전자주소
기반 유통



유통정보의
보관 및 증명



안정성

안정적인 전자문서의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부인방지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법인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

2.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절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절차

- 중계자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능력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세부절차

순서	내역	처리기관	조치사항	
1	신청서류 준비	신청기관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①인증신청서, ②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사업계획서, ④설비 및 기술능력 증적자료)	
2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기정통부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2	심사진행 의뢰	과기정통부→KISA	신청기관 제출서류 KISA에 전달(공문발송)	
3	심사일정 통보	KISA→신청기관	사업계획심사 및 기술심사 일정 통보	
4	심사	서류검토	과기정통부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
		사업계획 심사	과기정통부 (KISA지원)	전자문서 법·제도 이해도, 서비스 운영능력 등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기술심사	과기정통부 (KISA지원)	중계자 설비기준 및 기술능력 심사 (필요시 추가 기술심사 실시)
5	심사 결과보고	KISA→과기정통부	사업계획 및 기술심사 결과보고	
6	인증여부 결정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내부검토	
7	인증서 작성	과기정통부	인증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3호)	
8	중계자 인증서 발급	과기정통부→신청기관	종합 결과 확인 후 중계자 인증서 교부	

1 신청서류 준비 및 접수

● 신청서류 준비

- 인증신청서 1부 (부록 1-01 양식 작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중계자 서비스 사업계획 설명 자료
- (설비 및 기술능력 증적자료) 공인전자문서중계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록 2-03 기술심사 항목에 대한 증적자료)

사업계획서 내 포함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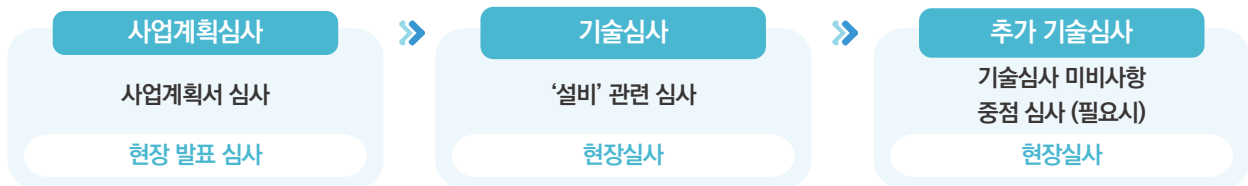
- ✓ 서비스 소개, 서비스 강점,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제시
-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능력, 서비스 운영 계획,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등 제시
- ✓ 설비 보유 리스트,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서 포함
- ✓ 설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에 대한 요건 충족 내용 포함
- ✓ 사업계획심사 평가항목별(4개부문 14개 지표) 세부 내용 포함 (부록2-02)
- ✓ 이 외, 사업계획 및 중계자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전부 기재

● 신청서 제출

- 인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설비 및 기술능력 증적자료 각 1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E-Mail로 제출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심사

- **심사절차** ① 사업계획심사 → ② 기술심사 - 중계자 '설비' 등 인증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 ③ 1차 기술심사 미비사항 위주로 추가 심사



● 심사 및 평가방법

구분	심사내용	평가방법	평가내용	비고
1	사업계획 심사	대면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4개부문 14개 지표 평가 ※ 부록2-02 사업계획심사 평가항목참고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 적합 ', 평균 80점 미만일 경우 ' 부적합 '
2	기술심사 (1차)	현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전자문서법 및 고시에 따른 설비 및 기술능력 등 평가 ※ 부록2-03 기술심사 평가항목 참고 	전 항목이 ' 적합 '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있을시 보완 후 추가 기술심사 진행
3	추가 기술심사	현장심사 또는 온라인심사	상동	1차 기술심사 시 부적합 항목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후 심사

2.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관리 및 유지

- 중계자 인증을 취득한 자는 중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 및 하위 고시에 따라 중계자 인증 유지기간 동안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사후관리 사항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1회 이상 중계 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중계자는 점검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계 설비에 대한 점검 업무를 전자문서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담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위탁하였으며, 전담기관은 점검일 15일 전까지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수검대상 중계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정기점검 항목은 중계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전담기관은 해당 항목들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중계자는 조치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사항 준수

- 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60일 전까지 다음의 해당하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시 제출서류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신청서

- 붙임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붙임2. 사업계획서
- 붙임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중계자로부터 인증갱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인증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요건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시정명령 해당 여부
3. 시정명령 기록 및 위반여부
4. 최초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 여부

-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중계자에게 갱신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통계관리 사항 준수

- 중계자는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전담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9조(통계)** ①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통정보·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유통정보·유통증명서의 발생 건수, 이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계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정기감사 사항 준수

- 중계자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정기감사는 내부 감사자 또는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으며 정기감사 주기는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8조(감사)** ① 중계자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 다만, 정기 감사는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 ② 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 또는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자는 중계자의 운영·기술적 관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2.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
 3.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
 4.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
 5.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제10조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7. 제11조에 따른 영업 휴지·폐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 및 공지
- ④ 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영업휴지 및 폐지 사항 준수

- 중계자는 중계업무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일 30일 전,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일 60일 전까지 이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중계자가 영업 폐지를 하려는 경우 폐지 이후 전자문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영업폐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11조(영업 휴지 · 폐지의 통지)** ①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 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영업을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을 영업을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 또는 영업을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3.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기본 원칙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원칙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는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중계 플랫폼은 아래의 서비스 기본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p>신뢰성</p>	<p>책임성</p>	<p>이용자 보호</p>
<p>전자문서 송신부터 수신까지 소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문서 전달 및 유통기록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p>	<p>중계자는 자신이 인증받은 플랫폼의 신뢰성·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피해복구·피해보상 등 직접 책임질 수 있어야 함</p>	<p>전자문서 수신과정에서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p>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플랫폼 허용 기준 원칙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전자문서유통 플랫폼은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중계자 인증 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2종 : 전자문서유통 플랫폼 소개자료(별도 양식 없음), 플랫폼 필수요건 증적자료

- 1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또는 프로그램, 단말기 등)을 갖추어야 함**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기준,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2 **전자문서가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함**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3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타 중계자와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 4 **이용자의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유통 플랫폼 내에서 1개의 공인전자주소만 사용 가능해야 함**
 ※ 근거 : (고시)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5 **전자문서 송신, 수신, 열람 등에 대한 정의 및 시점(시각정보 등) 기준 수립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6 **이용자가 송신, 수신, 열람한 전자문서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체계(부인방지)를 갖추어야 함**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7 **수신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열람하기 전에 본인인증 과정을 수행하고 본인인증 수단*에 대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 본인인증 기술 허용 기준 (부록2-04 참고)
 ※ 전자문서에는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시 본인인증 과정 필수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 8 **제7항의 본인인증 수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문서에 한하여 선택(생략 등)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갖추어야 함**
 * 송신자(발송기관 등)와 중계자 간 서비스 계약 내용에 개인정보가 없는 문서목록 및 책임 등 조항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고 기능 제공 등 후속조치 체계 구비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 9 **공인전자주소 이용자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3.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전 준수사항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 및 유통협약 체결

- 이용자는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해 전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합니다. 현재 공인전자주소등록 업무는 전담기관이 중계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전담기관과 중계자 간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및 유통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구분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	유통협약
목적	공인전자주소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업무 위탁	공인전자주소 등록업무 위탁을 위한 협약
체결기간	1년	3년 (협약사항)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전 점검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취득 후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중계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전 점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 후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최종 점검으로 인증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 당해년도 서비스 전 점검을 받은 중계자는 그 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발송기관과 서비스 계약 시 준수 사항

광고·송신 금지

발송기관과의 전자문서 발송 계약 시 광고·송신에 대한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규정 등을 명확화해야 합니다.

발송문서 위·변조방지

발송기관에서 발송한 원본문서는 위·변조가 불가하도록 조치하게끔 안내하고, 위·변조 조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발송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중계자는 발송문서에 대한 해시값을 안전한 해시알고리즘 (SHA-256 권고)을 이용하여 생성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발송문서 관리

중계자는 발송기관과의 발송 계약 시 발송기관이 보내고자하는 전자문서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발송기관명	발송 전자문서종류	발송 전자문서 공식 명칭	발송전자문서 코드	전자문서 유형	개인정보 포함여부
국세청	전자고지	국세청 환급 안내문	00000A	세금	포함

구분	세부 설명																				
발송기관명	발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식 명칭																				
발송전자문서 종류	1. 전자고지, 2. 전자증명, 3. 전자영수증, 4 기타																				
발송 전자문서 공식 명칭	발송 전자문서에 대한 공식 명칭(중복 되어서는 안됨)																				
발송전자문서 코드	00000(총 5자리로 중복되지 않도록 채번, 영문, 숫자 혼용)																				
전자문서 유형	<table border="1"> <tbody> <tr> <td>1</td> <td>근로 / 소득 / 세금</td> <td>6</td> <td>환경 / 주거</td> </tr> <tr> <td>2</td> <td>건강 / 보험</td> <td>7</td> <td>여가 / 문화</td> </tr> <tr> <td>3</td> <td>금융 / 대출</td> <td>8</td> <td>생활 / 편의</td> </tr> <tr> <td>4</td> <td>교통 / 범죄</td> <td>9</td> <td>학습 / 교육 / 보육</td> </tr> <tr> <td>5</td> <td>국방 / 훈련</td> <td>10</td> <td>기타</td> </tr> </tbody> </table>	1	근로 / 소득 / 세금	6	환경 / 주거	2	건강 / 보험	7	여가 / 문화	3	금융 / 대출	8	생활 / 편의	4	교통 / 범죄	9	학습 / 교육 / 보육	5	국방 / 훈련	10	기타
1	근로 / 소득 / 세금	6	환경 / 주거																		
2	건강 / 보험	7	여가 / 문화																		
3	금융 / 대출	8	생활 / 편의																		
4	교통 / 범죄	9	학습 / 교육 / 보육																		
5	국방 / 훈련	10	기타																		
개인정보 포함 여부	1. 포함, 2. 미포함																				

[관리 항목 세부 설명]

발송기관명	발송 전자문서종류	발송 전자문서 공식 명칭	발송전자문서 코드	전자문서 유형	개인정보 포함여부
국세청	1	국세청 환급 안내문	00000A	1	1

[관리 예시]

3.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시 준수사항

광고 송신의 금지

-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는 광고·홍보 등의 의도가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보호

- 중계자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전자문서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또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보관등 및 전자문서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신거부 기능 제공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한정)

- 이용자가 더 이상 전자문서를 수신 하는것을 원치 않을 경우 중계자 플랫폼 내에서 수신거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신 거부는 최소 특정 발송자(발송기관) 단위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내문서함 **수신거부**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노후소득보장안내문, 기초연금신청안내문 등	수신거부하기
 건강검진결과, 영유아건강검진표, 진료내역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 등	수신거부 중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국세미납안내문,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 등	수신거부하기
 학자금대출 연체 정리 안내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 상환자 안내문 등	수신거부하기

본인확인(인증) 절차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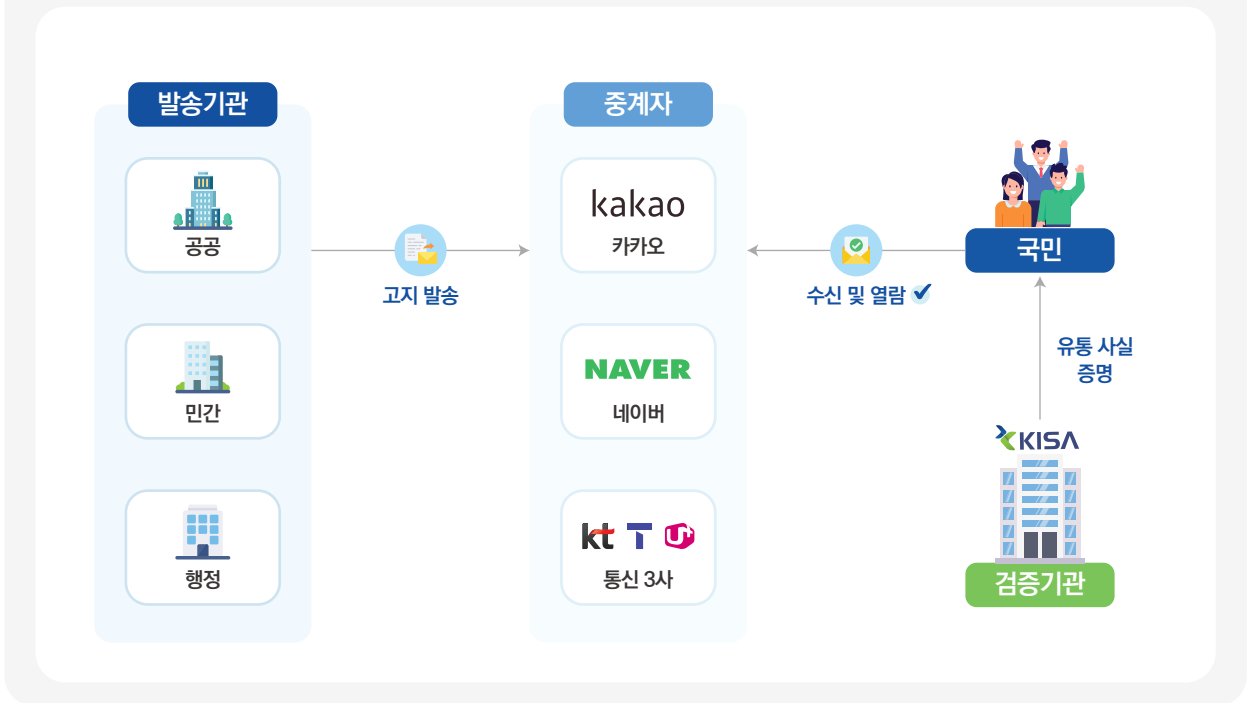
- 중계자는 이용자의 공인전자주소 등록 시, 전자문서 열람 시, 유통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인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4 주요 서비스 모델

모바일 전자고지

정의

공인전자문서 제도가 가지는 법적효력을 이용하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송달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증명하는 온라인 전자증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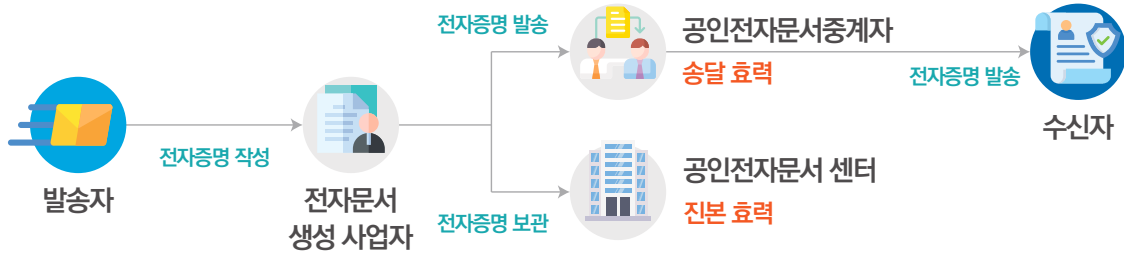
주요 서비스 사례

<p>국세청</p>	<p>국세환급금 안내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p> <p>근로장려금 안내 법인세 신고 안내</p>	<p>국방부</p>	<p>예비군 원격교육 수강통지서</p> <p>예비군 교육훈련 통지서</p>
<p>국민건강보험공단</p>	<p>국민 진료내역 안내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p> <p>장기요양환급금 지급신청 안내</p>	<p>국민연금공단</p>	<p>국민연금 가입안내 기초연금 신청 안내</p> <p>국민연금 수령액 안내</p>
<p>대한적십자사</p>	<p>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안내</p> <p>적십자회비 기부금 영수증 안내</p>	<p>한국도로교통공단</p>	<p>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p>
<p>지방자치단체</p>	<p>안내서</p> <p>자동차 종합검사 안내서 주민세·재산세·자동차 세 등 납부안내서</p>	<p>통지서</p> <p>민방위 교육 통지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p>	

모바일 전자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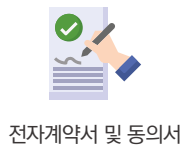
정의

공인전자문서가 가지는 법적효력을 이용하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송달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 제도기반 신뢰서비스



주요 서비스 사례

개인 간 전자증명 온라인 발송



모바일 전자영수증

정의

간단한 NFC 태그만으로 전자영수증을 수령하고 별도 앱 설치 없이 중계자 앱(카카오, 네이버)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저장하면 건 당 100원의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간편 전자영수증 발급 및 혜택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영수증 발급

발급받은 전자영수증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앱(네이버, 카카오) '전자문서함'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을 저장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탄소중립포인트 실적 상세조회 시 참여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표시됩니다



4.1 자주하는 질문(FAQ)

CHAPTER 01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 관련

-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회사의 인력 규모, 자본금, 매출액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나요?
- A** 중계자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부가조건은 없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중계설비, 기술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하기만 하면社内 어떠한 플랫폼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법적효력이 인정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신청자의 법인 명의로 발급되지만 실제 서비스는 인증 시 신청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점검을 받으시면 멀티 플랫폼 운영이 가능합니다.
-
-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을 하는데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A**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정확하게는 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준비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 세부 기준은 공개하나요?
- A** 중계자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기본 항목들은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의 경우 유선 및 미팅 등을 통해 인증 취득의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일 경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기술심사의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해 보완요청하여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심사, 기술심사 결과에 따라 중계자 인증을 취득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최종 부적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중계자 취득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시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과기정통부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을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CHAPTER 02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관리 관련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후관리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연 1회 최대 2일 안에서 중계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증적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전담기관의 조율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Q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때 별도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 인증 갱신을 위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중계자 인증 갱신을 판단하는 주요 내용 중 인증 사후관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갱신 전 정기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계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Q 영업 휴지 상태인데 사후관리 등 중계자 인증 유지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중계자 휴지 상태는 이용자에게 중계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을뿐 중계자가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CHAPTER 03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운영 관련

Q 타 전자문서 서비스와 병행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는 문서의 경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타 서비스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전자문서 서비스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가 없는 단순 알림성 전자문서에도 본인확인[인증]이 필요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단순 알림성 전자문서의 경우 열람기능(본인인증)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담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Q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인전자주소 가입 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KISA에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합니다. 수집해야하는 필수 개인정보는 이름, 공인전자주소, CI(연계정보)입니다.

0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2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주요장비의 개요	설치장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0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 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2. 2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주요장비의 개요	설치장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0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

[별표2]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항목	세부기준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 설비	송신·수신 설비	1.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는 기능,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기능, 망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을 갖춘 것 2. 송신·수신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송신·수신·열람 사실 확인, 부인 방지 기능을 갖춘 것
	시스템 연계 설비	1.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간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간 연계를 통하여 유통정보의 보관 요청·유통증명서의 발급 요청 및 전달 기능,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취소 기능을 갖춘 것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신청자 본인확인 기능, 정보관리 기능을 갖춘 것
	전자문서 등의 보관설비	유통중계시스템 사이에 송신·수신된 전자문서, 유통정보, 유통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보관하는 설비를 갖춘 것
전자문서의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 하는 설비	시각보정 설비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여 각 설비의 일자·시각을 보정하는 설비를 갖춘 것
	운용기록 관리 설비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모든 이력정보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운용기록을 기록 및 관리하는 설비를 갖춘 것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보안 설비	1.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은 국내·외 CC 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안 기능을 갖춘 것 2. 시스템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아래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구현 -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 수행 -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제공 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운용기록을 생성 및 보존할 것 다. 감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망 설비	1. 망 회선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할 것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터의 회선을 사용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유통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2. 내부망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경로를 갖춘 것 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유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나. 라우터의 이중화 다. 전자문서유통 업무 용도로만 구성

구분	항목	세부기준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통제구역 설치	중계자의 시설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은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통제 구역으로 구획할 것
	출입통제·감시장치	신원확인 기능이 있는 출입통제장치 및 CCTV를 갖출 것
	재해 예방설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 경보장치, 소화장치, 수재 예방설비를 갖출 것
유통정보 생성 및 검증 설비	시각보정 설비	유통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시각보정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각의 첨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운용기록 관리 설비	유통정보가 수신된 즉시 검증하는 기능을 갖출 것
	유통증명서 발급 설비	유통증명서를 생성·발급하고자 하는 중계자는 유통증명서 생성·발급·검증 및 보관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시스템 관리 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3. 실시간으로 망, 장비,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4. 시스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용 될 수 있는 기능
	백업 설비	백업설비는 시스템내의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시 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중계자가 등 별표의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전자문서의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유통정보 생성 및 검증설비, 시스템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해당 설비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그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이용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28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	중계자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이 등 별표의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의 물리적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계자의 일부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사항목	번호	세부 심사항목	평가점수	
			배점	점수
1 전자문서 제도 및 전자문서법에 관한 이해도 평가 (20점)	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5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과 업무의 범위를 숙지하고 있는가?	5	
	1.1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중계자의 준수사항과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10	
	합계		20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능력 평가 (40점)	2.1	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15	
	2.2	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15	
	2.3	IT 인프라 구축이나 유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 경험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이력·경험 등이 있는가?	5	
	2.4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문서 산업 환경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5	
	합계		40	
3 이용자 보호 및 이용 편의성 등을 위한 서비스 구현능력 평가 (30점)	3.1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자문서 수신 거부 혹은 회원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가?	10	
	3.2	서비스 관련 문의, 민원제기 등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5	
	3.3	전자문서 수신동의 절차와 수신동의 약관 내용 전문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 받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5	
	3.4	공인전자주소 수수료를 받을 경우 정책 및 관련 내용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만점처리)	5	
	3.5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이 다양한 운영체제(Android, iOS, IE, Chrome, Safari 등)를 지원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UI/UX)로 구현되어 있는가?	5	
	합계		30	

심사항목	번호	세부 심사항목	평가점수	
			배점	점수
4 서비스의 확장성 평가 (10점)	4.1	송신자·수신자 서비스 가입·제휴, 프로모션 등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5	
	4.2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계획하고 있는가?	5	
	합계		10	
총 계			100	

평가의견	
------	--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신규 인증 기술심사 평가표

심사대상			
일시			
장소			
번호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점검결과
1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업무수행 능력점검	1-1-1.	전자문서유통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등) 운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2		1-2-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송·수신 또는 중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
3		1-3-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해지 및 변경 절차 등을 갖추고 있는가?
4		1-3-2.	공인전자주소 이용자에 대한 정보관리 기능을 갖추고 전담기관의 유통관리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등록 또는 등록이 실패할 경우 재등록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는가?
5		1-4-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중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유통정보 등을 생성 및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6		1-4-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담기관의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유통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이 실패할 경우 유통정보를 재등록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였는가?
7		1-4-3.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정보와 전담기관의 유통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가?
8		1-4-4.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송신자가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통정보 (송신자 요청에 의하여 중계된 전자문서에 한 함)의 수취(수신과 열람에 한 함)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는가?
9		1-4-5.	전자문서의 유통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생성 시 SHA-256 해시함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10		1-5-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이용자가 유통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11		1-5-2.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 유통증명서의 생성·발급·검증 및 보관 등을 위한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가?

번호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점검결과
12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업무수행 능력점검	1-6-1.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중계시스템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용도로만 운영하고 있는가?
13		1-6-2.	전자문서유통 업무 수행을 위한 ISP 회선 및 라우터 등은 이중화로 구성되어 하나의 통신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유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4		1-6-3.	전자문서유통 업무 수행을 위한 망회선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로 구성되어 있는가?
15		1-6-3.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미가입자에게 전자문서가 발송된 후 해당 전자문서의 열람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자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에 가입 및 열람을 시도할 때 해당 전자문서가 열람되지 않도록 제한 및 안내하고 유통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가?
16		1-7-1.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미가입자에게 전자문서의 수신 등의 여부 등 안내 시 서비스 미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였거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17		1-7-2.	이용자가 타인의 전자문서 또는 광고성 전자문서 등을 수신할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18		1-7-3.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 거부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19		1-7-4.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공인전자주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0		1-7-5.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공인전자주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1-7-6.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22		1-7-7.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문서가 수신되어 보관되는 문서함 등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된 전자문서와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지 않은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23		1-7-8.	유통중계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장비는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
24		1-9-1.	유통중계시스템 내 공인전자주소 등록자 본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5		1-9-2.	정보주체(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등을 위한 본인인증 수행 시 허용된 기술범위 내에서 본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6		1-10-1.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및 열람 사실 등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부인방지를 위한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가?

번호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점검결과
27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업무수행 능력점검	1-10-2. 유통중계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중계(송신, 수신 및 열람 등)하며 생성 되는 작업 수행 이력과 전자문서의 유통정보에 대한 위·변조 및 삭제 등을 방지 또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는가?	
28		1-10-3. 유통중계 설비의 모든 로그파일에 대한 저장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29		1-1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중계자의 운영·기술적 관리부문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 후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가?	
30	정보보안 관리체계 점검	2-1-1.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31		2-1-2.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32		2-2-1. 유통중계시스템 등 서버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33		2-2-2. 유통중계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34		2-2-3. 외부에서 원격으로 유통중계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35		2-2-4.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인가된 사용자만이 유통중계시스템이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 할당, MAC 주소 제한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가?	
36		2-2-5. 유통 중계 설비(네트워크, 서버 등)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를 명확하게 식별 및 인증하고 설비 접근 시 안전한 접근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37		2-2-6. 유통중계시스템 등 중요 서버의 접속 연결시간 및 동일 사용자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38		2-2-7.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39		2-3-1. 중계자 유통중계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40		2-4-1. 유통중계시스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자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OS,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패치적용 및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41		2-4-2. 유통중계시스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자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	
42		2-5-1.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유통중계시스템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였는가?	

번호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점검결과
43	정보보안 관리체계 점검	2-6-1. 전산실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등 유통중계시스템 등이 위치하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44		2-6-2. 이동컴퓨팅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및 보조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출입 통제와 보안사고 예방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45		2-6-3.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신청 및 수행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기록을 분기별 1회 이상 검토하고 있는가?	
46		2-6-4. 유통중계시스템 등에 대해 24시간 감시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47		2-7-1.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유통중계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48		2-7-2.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49		2-8-1.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있는가?	
50		2-9-1. 유통중계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51		2-9-2.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사용자 계정 등록·삭제(비활성화)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52		2-9-3.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유통중계시스템 등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가?	
53		2-9-4. 유통중계시스템에 적용된 접근권한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54		2-9-5. 유통중계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월 1회 이상 검토하고 있는가?	
55		2-10-1. 유통중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든 장비의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56		2-11-1. 정보주체(이용자)가 중요 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의 적용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57		2-11-2.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 등 사용자가 전자문서 유통중계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방식 및 로그인 횟수 제한 등 접근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58		2-11-3. 전자문서 중계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번호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점검결과
59	정보보안 관리체계 점검	2-12-2.	전자문서 중계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를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정책에 따라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60		2-12-3.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변경, 배포, 복구, 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61		2-13-1.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유통중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62		2-13-2.	유통중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중계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PC 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악성코드 예방, 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63		2-13-3.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64		2-14-1.	전자문서 유통중계시스템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65		2-14-2.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관련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는가?
66		2-14-3.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고 있는가?
67		2-15-1.	유통중계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68		2-15-2.	유통중계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였는가?
69		2-16-1.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70		2-16-2.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훈련 후 그 결과를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71		2-17-1.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72		2-18-1.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 인증을 갖추었는가?

번호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점검결과
7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3-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가입 대상자에게 공인전자주소 생성 및 이용 등에 관한 약관 동의를 받고 있는가?
74		3-2-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75		3-2-2.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76		3-2-3.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77		3-2-4.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가?
78		3-3-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79		3-4-1.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을 할 경우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80		3-5-1.	유통중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의견	
------	--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본인인증	인증기술 설명 및 근거	
비밀번호 방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종류 이상의 문자구성으로 8자리 이상 길이의 문자열 ※ 문자종류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의 4가지임 •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열 ※ 숫자로만 구성불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내 이용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생체기반 (지문 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 사람의 신체정보와 행동적 특징을 활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안원은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 가이드를 기준으로 생체인증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 기준 제시
휴대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S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정보 입력 → 1회용 비밀번호 수신 • PASS App : 이름, 휴대폰번호, 캡차인증 후 PIN6자리 입력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신용카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공동인증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전자서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인 PIN, 생체인증 등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하여 허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가입자 등록)
스마트폰 앱 인증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안원 등 기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 앱에 한하여 스마트 패턴, PIN 6자리 등 단독 허용 또는 2Factor 본인인증 절차 허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